학교법인 중앙학원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중앙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부산전문대학 (교명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동)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예산·결산의 공개) 법인 회계 및 학교 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 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1인을 포함한다.)

②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2년(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 규정에 위반 할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법인의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 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1로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⑧ 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1. 사립학교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법제61조의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당해 대학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회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4 (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성하는 자로써 그 자격기준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 전임교원 이상
2. 직원 3인
3. 학생 1인 : 재학생 중 대표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31조의5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31조의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제조, 도·소매업, 서비스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부를 둔다.
1. 중앙학원 수익 사업부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중앙학원 수익사업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동)에 둔다.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

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③ 전문대학의 부총장, 처·실장, 부속기관장·학과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 정년보장을 받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단, 학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제39조의 2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39조의 3 (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전문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개 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할 수 있다.

제39조의 4 (종전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다.)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3. 조교수 : 4년
② 학교의 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 전까지 해당 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 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9조의 5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예정 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외국인 교원의 경우 제외)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

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의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업적과 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 2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 3 (명예퇴직) ①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 4 (희망퇴직) ①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일정기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희망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임·면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관 제39조의 4 제3항 및 제8항 규정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의 2의 제1항 제4호를, 제3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 4의 제6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단, 강사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9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64조 ~ 제77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78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과 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한 당해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 (임용) ①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0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81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업무의 곤란도, 업적, 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82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83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중앙학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4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전문대학

제85조 (총장 등)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문대학을 대표한다.
③ 전문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기획처, 교학처, 입학관리처, 취업지원처, 행정지원처를 둔다. 그리고, 총장 직속으로 대외협력본부를 두며 운영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

다.
② 기획처장, 교학처장, 입학관리처장, 취업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의 처 이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부속기관) ① 전문대학에 필요한 부속 기관을 두며, 부속 기관에는 종합정보원,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문화예술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종합정보원,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문화예술원 등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의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제88조 삭제

제 3 절 정 원

제89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9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9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강병영	38. 7. 3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27번지
이 사	김천혜	38. 8. 16	4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232-12번지
이 사	안정악	42. 4. 2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27번지
이 사	최정락	32. 5. 8	4년	부산광역시 남구 민락동 171-15번지
이 사	최정자	45. 3. 21	4년	부산광역시 진구 연지동 376-8번지 삼익아파트
감 사	백의식	40. 4. 15	2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907-7번지
감 사	황성주	46. 9. 23	2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곡동 동원맨션 296-116번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설치 학교명(부산전문대학)은 1985. 3. 1부터 시행하며 1985. 2. 28까지는 학교법인 성지학원에서 설치, 경영할 당시의 교명(성지공업전문대학)을 사용한다.

제2조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지공업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일반직원 중 계속 재직 희망자는 이 정관에 의한 대학의 교·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 및 기간의 산정은 교원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6.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9. 5.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1. 2. 8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1. 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5. 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6.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 10. 9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된 교원은 개정전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보며, 단 1997년 9월 1일 이후 임면되는 교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부산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부산정보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 4.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 제39조의 3 및 제39조의 4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 4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 39조의 3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 6.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2007.7.27(사립학교법시행일)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6.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8.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2.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 5.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 9.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의 제3조, 제20조의3 ①항, 87조의2는 201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부산정보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부산과학기술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정관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의 제3조, 87조의2는 201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부산과학기술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6.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12.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 2.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2.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1.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11명
일반직 계	6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　사)	2명
6급(주　사)	1명
8급(서　기)	2명
기능직 계	5명
(10등급 계)	5명
운전기사보	1명
사무보조원	4명

[별표 2]

전문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9명
일반직 계	55명
2급(참여)	1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사)	2명
5급(부참사)	10명
6급(주사)	12명
7급(부주사)	10명
8급(서기)	15명
9급(부서기)	4명
기술직 계	4명
기술직 6급	1명
기술직 7급	1명
기술직 8급	1명
기술직 9급	1명
기능직 계	30명
(7등급 계)	4명
운전기사보	2명
사무보조원	1명
방호원	1명
(8등급 계)	6명
운전기사보	1명
사무보조원	4명
방호원	1명
(9등급 계)	12명
운전기사보	2명
사무보조원	8명
방호원	1명
보일러기사보	1명
(10등급 계)	8명
전기기사보	1명
교환원보	1명
사무보조원	4명
방호원	1명
보일러기사보	1명